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장관이 구직촉진수당 등을 입금하는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,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하여 입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및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 법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조(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 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금 업무의 효율적인 처 리 등을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및 「우체국예금·보 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신 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해 야 한다.</u>